2027년 유도 국가대표팀
지도자, 의료면허소지자 및 트레이너(기술) 공개채용 공고(안)

대한유도회는 대한민국 유도의 발전과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문성과 지도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요약

구분	내용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2026. 11. 2.(월) ~ 12. 3.(목) 15시 도착분에 한함
서류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judo@sports.or.kr) *우편접수 불가
전형일정	서류전형: 2026. 12. 10.(목) 14:00 면접전형: 2026. 12. 15.(화) 14:00
합격자 발표	대한체육회 승인 후 대한유도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문 의	대한유도회 사무처 ☎ 02-422-0581

2. 채용 분야 및 인원:

[남자대표팀] 감독 1명, 코치 2명, 의료면허소지자(물리치료사) 1명, 트레이너(기술) 1명
[여자대표팀] 감독 1명, 코치 2명, 의료면허소지자(물리치료사) 1명, 트레이너(기술) 1명

3. 근무 형태 및 조건

가. 근무시간: 계약서 및 훈련 지침에 따름
나. 근 무 지: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및 강화훈련지(국내・국외), 국제대회 현장 지원 등
다. 계약기간: 2027. 1. 1. ~ 2028. 7. 31.(2028 LA올림픽대회 파견 후)
라. 보　　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코치, 의료면허소지자(물리치료사), 트레이너(기술) 수당 규정 준용

4.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직책	자격요건
감독	1. 유도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국제유도지도자자격증((UCJI)) 소지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유도 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유도 종목 경기 지도경력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유도 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 유도 종목 지도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사람 -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코치	1. 유도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국제유도지도자자격증((UCJI)) 소지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유도 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유도 종목 경기 지도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유도 종목 경기 지도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담팀 (물리치료사)	1. 물리치료사 자격증(보건복지부 발급) 소지자 2.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및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 4. 국가대표 훈련(진천선수촌 등) 및 국제대회 파견에 지장이 없는 자 5.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담팀 (기술 트레이너)	1. 유도 종목 2급 이상 전문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유도 종목 경기 지도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에 지장이 없는 자 4.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업무

직책	자격요건
지도자 (감독,코치)	1. 국가대표 강화훈련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연간, 월간, 주간 훈련계획서 작성 3.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체력, 기술, 심리, 영양, 인성, 특이점 등) 4. 일일 훈련일지 작성 5. 유도 국가대표 강화훈련대상 선수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6. 강화훈련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교체 건의 7.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자의 국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지도 8.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9.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10. 강화훈련 참가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감독 11. 강화훈련 참가자(선수, 트레이너, 전담팀 등)의 인권 보장 및 안전 보호 12. 차세대 우수 선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육성 13. 국가대표 지도자 보수교육(훈련스킬, 훈련의 의·과학화, 심리분석, 선수인성·인권 교육 방법 등) 이수 14. 국내외 정보 수집을 통한 경쟁 국가 및 선수 분석

	15. 선수별 미비점 상호 보완, 훈련 성과 및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선수의 소속팀 지도자와의 연간 훈련계획 공유 16. 체육회 및 사용자의 훈련운영에 관한 요구에 대한 협조 17.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사항
전담팀 (의료면허소지자)	1. 국가대표 선수 대상 물리치료 및 재활 관리 2. 부상 예방 및 안전 교육 3. 선수별 신체 상태 및 훈련성과 기록 관리 4. 치료일지 작성 및 합숙생활 관리 5. 강화훈련 참가 선수의 인권 보장 및 안전 보호 6. 대한체육회・대한유도회 훈련운영 관련 지원 업무
전담팀 (기술_트레이너)	1. 선수의 전력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2. 주간, 월간, 연간 활동보고서 3. 전력분석 관련 부대적 행정 관련 업무(계획의 수립과 결과보고서 및 협회 보고 의무 등) 4. 각종 대회 참가의 준비 및 참가 5. 선수의 선발에 필요한 전력분석 자료 지원 업무 6. 기타 전력분석과 관계된 부대 업무 7.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체력, 기술, 심리, 영양, 인성, 특이점 등) 8. 일일 전력분석일지 작성 및 제출 9. 강화훈련 참가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관리 10. 강화훈련 선수의 인권 보장 및 안전 보호 11. 국가대표 전력분석관 보수교육(훈련스킬, 훈련의 의・과학화, 심리분석, 선수인성・인권 교육 방법 등) 이수 12. 체육회 및 고용인의 훈련운영에 관한 요구에 대한 협조 13. 기타 이와 관계된 부대 업무

6. 전형 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

1) 선발기준: 70점 이상 득점자 중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70점 이상 득점자가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인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2) 평가점수(총100점)

지도자(감독,코치)	의료면허소지자 (물리치료사)	전담팀(기술 트레이너)
① 지도경력 20점(정량) ② 인권보호 역량 10점(정량) ③ 자기소개서 35점(정성) ④ 지도계획서 35점(정성)	① 전공 및 자격 30점(정량) ② 경력 30점(정량) ③ 인권보호 역량 10점(정량) ④ 자기소개서30점(정성)	① 지도경력 20점(정량) ② 인권보호 역량 10점(정량) ③ 자기소개서 35점(정성) ④ 기술 지도계획서 35점(정성)

3) 정량평가 기준

(지도자 및 기술 트레이너)

① 지도경력: 대한유도회 발급 확인서 기준

(11년 이상 20점, 6년~10년 15점, 3년~5년 10점, 1년~2년 5점 / 1년~2년 5점)

② 인권보호 역량: 인권관련 교육 이수증

(6개 10점, 4-5개 8점, 2-3개 6점, 1개 3점, 0개 0점)

(의료면허소지자-물리치료사)

① 전공 및 자격:

(전공 및 자격증 있는 경우: 30점, 자격증만 있는 경우: 25점)

② 경력: 관련 경력에 한함.

(6년 이상 30점, 4년~5년 25점, 3년~4년 20점, 2년: 20점)

③ 인권보호 역량: 인권관련 교육 이수증

(3개 10점, 2개 8점, 1개 3점, 0개 0점)

나. 면접전형:

직책	평가기준
지도자 (감독,코치)	① 국가대표 지도 역량(30점) ② 경기력향상 방안(20점) ③ 심판규정 숙지(20점) ④ 선수관리 능력(20점) ⑤ 인권의식(윤리성) 및 지도자로서의 품행(10점) ⑥ 항목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의료면허소지자 (물리치료사)	① 전문성(40점) ② 책임성・의사소통(30점) ③ 국가대표 적합성(30점) ④ 항목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전담팀 (기술트레이너)	① 기술지도 및 전력분석 전문성(40점) ② 국가대표팀 운영 및 직무 이해도(30점) ③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30점) ④ 항목을 합산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다.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

직책	처리 기준
지도자 (감독,코치)	① 국가대표 지도 역량 고득점자 → ② 경기력향상 방안 고득점자 → ③ 심판규정 숙지 고득점자 → ④ 선수관리 능력 고득점자 → ⑤ 인권의식 및 지도자로서의 품행 고득점자 순
의료면허소지자 (물리치료사)	① 전문성 고득점자 → ② 책임성・의사소통 고득점자 → ③ 국가대표 적합성 고득점자 순
트레이너(기술)	① 기술지도 및 전력분석 전문성 고득점자 → ② 국가대표팀 운영 및 직무 이해도 고득점자 → ③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고득점자 순

라. 최종합격자: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한체육회 승인 후 최종 확정 및 통보

마. 예비합격자: 차순위 1, 2위로 하며, 최종 합격자가 중도 포기 및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채용한다.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바. 기타:

① 서류전형 합격자는 70점 이상 득점자 중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단,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에 미달되더라도 평가기준 점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며, 기준 점수 미달된 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② 장애인, 청년고용촉진법 적용대상자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의 특수직으로 인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7. 제출 서류

직책	제출서류
지도자 (감독,코치)	1. 지원서(양식) 2. 자기소개서(양식) 3. 국가대표 활동계획서 4.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5. 국제유도지도자자격증(UCJI) 사본 6. 지도경력증명서 7. 스포츠윤리센터 발급 징계사실유무확인서 8.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양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0. 성폭력 및 인권교육 이수증(해당자) 11. 경기실적증명서 및 국가대표 경력증명서(해당자) 12. 기타 성적증명서 및 자격증(해당자) 13. 건강진단서(공무원 채용용, 발급일 2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의료면허소지자 (물리치료사)	1. 지원서(양식) 2. 자기소개서(양식) 3. 물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양식) 5. 경력증명서 6. 스포츠윤리센터 발급 징계사실유무확인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8. 최종 졸업증명서(전공확인용, 해당자) 9. 성폭력 및 인권교육 이수증(해당자) 10. 건강진단서(공무원 채용용, 발급일 2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전담팀 (기술트레이너)	1. 지원서(양식) 2. 자기소개서(양식) 3. 기술 지도계획서 4. 전문스포츠 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사본 5.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별첨 양식) 6. 지도경력증명서

	7. 스포츠윤리센터 발급 징계사실유무확인서 8.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양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0. 성폭력 및 인권교육 이수증(해당자) 11. 건강진단서(공무원 채용용, 발급일 2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8. 심사위원 운영

가. 서류심사: 3명(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나. 면접심사: 5명(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다. 심사위원은 지원자와 친족관계, 동일 소속팀 관계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기피・회피한다.(이해충돌방지법 적용)

9. 결격사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10. 기타 사항

가. 접수 마감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허위사실 기재 및 부정행위 시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종료 후 14일 이내 파기됩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폐기합니다.

2026년 11월 00일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국가대표, 전담팀, 경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전담팀,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6., 2026. 2. 2.>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3. 7. 5.>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7. 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 행위
 라.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7. 5.>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